

의안번호 제1627호	<b>[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5. 1.(금)
- 나. 제출자 : 강혜경 의원 외 10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1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1.(월)

## 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서 준용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분리되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으로 제정(2018. 3. 20.)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에 규정된 기준을 따름(안 제3조제2항)
- 나. '장애'의 인정범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함(안 제5조제1호)
- 다. 유족의 우선순위를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름(안 제6조제1항제1호)
- 라. [별지 제1호 서식] 서식 정비

## 4. 검토의견

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「공무원연금법」에서 분리되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

내용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**관 련 법 규**

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

[시행 2018. 9. 21.] [법률 제15554호, 2018. 4. 17., 타법개정]

**제4조(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**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. 다만,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

1. 공무상 부상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(이하 "공무상 사고"라 한다)로 인한 부상

가.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
나.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

다.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2. 공무상 질병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

가.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·화학적·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

나.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·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다.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라.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·질병·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.

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.

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. 다만,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

지 아니한다.

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, 성별, 나이, 체질, 평소의 건강상태, 기존의 질병 유무, 병가, 휴직,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

[시행 2020. 1. 16.] [대통령령 제30256호, 2019. 12. 24., 타법개정]

**제40조(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)**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"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(이하 "장해등급"이라 한다)을 말하며,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. 다만,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(重)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.

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#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

[시행 2018. 9. 21.] [법률 제15554호, 2018. 4. 17., 타법개정]

**제11조(유족의 우선순위 등)**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.

②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,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